

#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2월 24일(금)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2월 27일(월)

#### 4. 관계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5.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에 포함하고, 조항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6. 주요 개정 내용

-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추가  
(안 제3조)
- 조항과 조문의 용어 순화 및 현행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  
(제명, 안 제1조 내지 제13조)

## 7.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 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고,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검토의견으로는

지역 통합방위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의 구성위원 조항에 지방 보훈청장을 추가하고, 주요 조항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여 현행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됨.

# 관 계 법령

## 통합방위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흥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

[제7조에서 이동, 총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